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35 발의연월일: 2022. 7. 13.

발 의 자:백혜련·강민정·고용진

김병주 · 김승남 · 김태년

양경숙 • 이인영 • 최기상

최종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실태조사에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"관계"를 각각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"으로 한다.

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노인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	제5조(노인실태조사) ①
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	
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	
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	
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실태조사에는</u>
	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
	포함되어야 한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	②
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<u>관계</u>	<u>관계</u>
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	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
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	단체의 장, 관련
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	
경우 <u>관계</u>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	
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	<u>관계 중</u>
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	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
	체의 장, 관련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